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22일, 이원택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7.)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원택 의원)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농가의 52.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보다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에 대한 재해보험 및 재해대책 교육의 확대와 함께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손해평가 이의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손해평가사의 교체 요구를 보장하고, 정부에 대해 보험료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행정구역 및 권역단위의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농어업재해의 정의 변경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해주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선에서 농어업재해를 어느 범위까지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및 포함 사항 추가 등

기본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험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현행대로 5년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다만, 농식품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계획 변경 근거 마련을 통해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여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적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심의회 심의사항에 보험료율 산정방법 추가 등

개정안과 관련하여 먼저, 손해평가의 방법에 ‘재해에 따른 피해율’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은 손해평가의 결과로 피해율이 산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손해평가의 방법에 ‘보험료율 산정’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보험 운영체계에 있어 보험료율 산정과 손해평가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손해평가의 방법에 보험료율 산정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둘째, 현재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금융당국에 의한 규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어 보임.

즉, 보험료율 산출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전제로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규정(제129조)하고,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제176조제1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에서 보험요율을 산출한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법」에 적합한 경우에만 수리(제127조제2항 및 제4항)하는 한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자료 제출 및 검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제179조)을 마련하고 있음.

셋째, 심의회는 현재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고위공무원 7인과 재해보험 또는 농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4인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계리적·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는 보험연구나 보험계리 분야 인사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 심의회가 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심의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임.

□ 보험목적물 범위에 대한 재검토 연례화

윤준병·이원택의원안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도

록 할 경우 정부의 보험목적물 확대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다만, 보험상품으로서 ① 특정 품목의 도입이 결정되면 ②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지역 검토·확정, 표준수확량 개발, 보험료율 산정 등 상품개발을 선행한 후 ③ 일부지역에 상품을 판매하고 사고접수 시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 상품 운영의 과정을 거쳐 ④ 품목별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 명문화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현재 52% 수준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각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정부는 기존 50%의 보험료 지원수준을 높여 70~80%까지 지원하게 되는 반면 지자체의 평균 부담 비율이 현행 37.5%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농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은 윤준병·어기구의원안에 따를 경우 10% 이하로 감소하게 됨.

이에 따르면 보험료의 20%까지 자부담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평균 자부담 비율이 12.5%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가입자 전반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윤준병의원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5년에 5,22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방비 부담은 1조 545억원 감소하는 대신 국비 부담이 1조 5,7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둘째, 일반적으로 적정 수준의 자부담 비율 설정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윤준병·어기구의원안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비율이 10% 이하로 감소할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농어가 등의 재해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셋째, 보험료 지원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국고보조율을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보험에 관한 보험료 지원 비율을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하여 규정해온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정 지원 비율과 법률상 명시여부에 대해서는 타 정책보험과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보험료율 산정 기본단위의 누적 손해액 경감 비용 지원

개정안은 누적손해율이 높은 시·군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해보험사가 과거 해당 지역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 재원으로 보전함으로써 누적손해율을 낮추고 이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자연재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농어업인은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농어업인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정부 지원을 통해 누적손해액(누적보험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누적보험금(재해위험도)에 비례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도록 한 보험요율 산정의 기본원칙과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이로 인해 누적보험금에 비례한 보험료율 산정을 적용받고 있는 타 지역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